

해양경찰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시설관리) 채용 공고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유형	근무기관	직무등급	채용분야(직종)	채용인원	담당직무
계				3명	
공무직	해양경찰청 (인천)	5급 직무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	1명	해양경찰청 청사 시설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해양경찰청 (인천)	3급 직무	시설관리 (교대근무)	2명	해양경찰청 청사 시설관리 및 냉동공조안전원 업무 등 계약기간: 2026. 9. 1. ~ 2027. 8. 31. 1년

- ※ 본 공고문에는 채용분야 주요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채용대상자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 공무원 직급이 아닌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의한 등급임
- ※ 담당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첨부1] 참고
- ※ 채용분야·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무효처리)
- ※ 채용기간은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달라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시점에서 계약 기간 종료

2. 근무조건

가. 신 분

○ 시설관리(전기안전관리자 / 5급 직무) : 공무원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이 적용됨.

○ 시설관리(교대근무 / 3급 직무) : 기간제 근로자(1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026. 9. 1. ~ 2027. 8. 31.)

나. 근무시간

○ (시설관리 5급 직무) 주 5일 / 40시간 / 1일 8시간 근무

- 09:00 ~ 18:0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필요시 연장근무 가능
-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주휴 포함), 초과수당 별도

○ (시설관리 3급 직무) 6교대[야간(당직)-휴무-주간(당직)-주간-주간-주간]

- 당직근무 외 휴일(토·일·공휴일)시 휴무
- 주간근무(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 12:00 ~ 13:00
- 야간근무(17:30 ~ 익일09:30) / 휴게시간 4시간 / 02:00 ~ 06:00
- 기본근무시간 203.1시간 기준 / 초과근로 월 약 20시간 정도 발생

※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비상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명령할 수 있음.

다. 보 수 ※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보수) 기준

채용분야	직무등급	보수(월, 세액공제 전)	기타
공무직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	5급 직무	2,702,070원 - 기본급: 2,477,070원 ※ 209시간 기준 - 직급보조비: 65,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연장수당 별도 지급	※ 법정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별도 ※ 명절상여금 기본금 기준 60% 지급
기간제 시설관리 (교대근무)	3급 직무	2,485,280원 - 기본급: 2,260,280원 ※ 203.1시간 기준 - 직급보조비: 65,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연장수당 20시간(평균) 별도 - 야간수당 별도	※ 자격증 및 선임수당 별도 지급 ※ 3급 직무(교대)는 교대에 따른 추가수당(연장, 야간 등) 별도 지급

※ 공무원 직급이 아닌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의한 등급임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분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은 보수에서 공제

※ 해양경찰청 임금기준 등의 제·개정 및 업무조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 시간,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지급

마.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바. 수습기간 : 채용 계약 후 3개월

※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
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자격요건(필수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구 분	내 용
시설관리 5급 직무 (전기안전 관리자)	■ 위 공통요건 필수 ■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 해당 직종의 직무(직무기술서 참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자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시설관리 3급 직무	■ 위 공통요건 필수 ■ 만18세 이상 ■ 해당 직종의 직무(직무기술서 참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시설관리(건축·전기·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1개 이상)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구 분	내 용		
시설관리 5급 직무	■ 시설관리(건축·전기·기계) 분야 근무경력 ■ 시설관리(건축·전기·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자격요건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시설관리 3급 직무	■ 시설관리(건축·전기·기계) 분야 근무경력 ■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통 가산사항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기술자격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분야별	일반적 기준	기술자격 종목(예시)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등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등	건축기능사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기능사 등
기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기계, 재료,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에너지관리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용접기능사 배관산업기능사 기계정비 기능사 등
전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전기·전자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전기기능사 등

※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경력기준 : 해당 지원 분야(시설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 시설관리직의 경우 해당분야 시설·설비 등 유지관리, 공사, 현장 근무 등의 경력을 인정하되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4.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가. 채용공고 :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서류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 26. 7. 24.(금) ~ ' 26. 8. 3.(월)
 - 전자우편 : (시간) 마감일 18:00까지 / (주소) soopark3117@korea.kr
 - 방문·등기우편 접수 : 09:00~18:00(12:00~13:00제외),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해양경찰청 1층 민원실 방문접수, 등기우편(붙임2) 또는 전자우편(E-메일) 접수
 - ※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soopark3117@korea.kr
 - 제출제목 : 해양경찰청 공무직 및 기간제 지원서_성명(응시분야)
[예시 : 해양경찰청 공무직 및 기간제 지원서_홍길동(3급 직무)]
 - ※ 등기우편 접수(공무직 응시원서 재중 명기)는 마감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도착)된 원서만 한하여 유효(도착분에 한함, 소인분 X),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총무계
(청사관리반) 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 032)835-2528

5.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6. 7. 24.(금) ~ 8. 3.(월)	▶ 해경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서류 접수	2026. 7. 24.(금) ~ 8. 3.(월) 18:00까지	▶ 전자우편(E-메일) 접수(soopark3117@korea.kr) ▶ 해경청 민원실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시간 내 민원실 접수(도착)분에 한함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8. 7.(금)	▶ 해경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장소 공고
면접시험	2026. 8. 11.(화)	▶ 심사위원 면접 심사 / 장소 : 해양경찰청 본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13.(목)	▶ 해경청 홈페이지 공고
임용	2026. 9. 1.(화)	▶ 채용 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가능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인 경우, 공고연장 가능(기존 응시자 공고 연장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임용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최종합격자)

6. 응시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공통사항, 필수제출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수제출서류 1) 1부
- 응시원서(필수제출서류 2) 1부
- 자기소개서(필수제출서류 3)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제출서류 4) 1부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제출서류 5) 1부
- (남성만)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증명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 필수서류 누락시 자동탈락이므로, 제출 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 【경력 해당자】 해당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제출시 유의사항 >

- ①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 예정(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 자격증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계획

응시인원	합격인원 범위	비고
10배수 이하	-	소극적 서류전형*
10배수 초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적극적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여부 판단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 ① 자기소개서 ② 업무수행계획서 ③ 기타 우대요건 및 가산사항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10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 지원자가 10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서류점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면접 대상인원 등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평가내용)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평정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건강상태	상	중	하
② 관련업무 지식과 응용능력	상	중	하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	중	하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	중	하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	중	하

○ (합격결정)

-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1.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2. 서류전형 성적 순 3. 경력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3배수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컷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32-835-2528)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시설관리 5급 직무 >

구 분	응시분야	선발예정인원
공무직 근로자	시설관리 5급 직무 (전기안전관리자)	1명

계약 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인천광역시)

주요업무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 청사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청사 시설 정비 등 유지보수 업무 ○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조치 및 비상대응 ○ 시설관리분야 공구 및 자재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필요역량	○ 성실성, 청렴성, 고객에 대한 친절 ○ 관계법령, 규정 준수 태도 ○ 조직 친화력 및 적극적 업무자세 ○ 업무 수행 관련 비밀엄수, 품위유지 의무
------	--

필요지식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시설관리의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지식 및 경험 ○ 시설관리관련 용어, 도면 등 설계도서의 파악 능력 및 유지관련 법령 등의 이해도 ○ 시설 유지보수 관련 작업시 안전관리 지식
------	--

< 시설관리 3급 직무 >

구 분	응시분야	선발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2026.9.1. ~ 2027.8.31.) 1년간	시설관리 3급 직무	2명

계약 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인천광역시)

주요업무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업무 ○ 냉동제조 안전관리원 업무 ○ 청사 시설 정비 등 유지보수 업무 ○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조치 및 비상대응 ○ 시설관리분야 공구 및 자재관리
------	--

필요역량	○ 성실성, 청렴성, 고객에 대한 친절 ○ 관계법령, 규정 준수 태도 ○ 조직 친화력 및 적극적 업무자세 ○ 업무 수행 관련 비밀엄수, 품위유지 의무
------	--

필요지식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냉동제조 안전관리원 업무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시설관리의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지식 및 경험 ○ 시설관리관련 용어, 도면 등 설계도서의 파악 능력 및 유지관련 법령 등의 이해도 ○ 시설 유지보수 관련 작업시 안전관리 지식
------	--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담당자 기재				

■ 제출 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미제출
< 공통사항, 필수제출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가족 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1부		
4.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5.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6. (필수자격증) (자격증이름 :) (필수사항)		
7. (경력) 경력 증명서 (부) (경력기간 : 년 월)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8. (관련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자격증이름 :)		
9.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 제출 목록에 ✓ 표시 후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필수제출서류 2>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 없음
	(한자)	응시분야	
현주소 (거주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성별	☐ 남 ☐ 여	복수국적 여부	☐ 해당 ☐ 미해당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급)	직무내용	근무형태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전기안전관리자	상근/비상근/ 교대근무/시간제

* 응시번호는 미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 가능(최대 2페이지 이내)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_____(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사항, 면접시험 수험번호 등은 연락처로 통보 예정 〉
 - ③ 자 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 ④ 경 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 작성요령 - 제시된 소재목(주제)을 바탕으로 <u>작성자 본인의 역량</u>을 기술 - 분량은 <u>A4용지 2매</u> 이내, 워드프로세서,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신명조, 13p)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지원동기 및 포부)	

학업 및 경험(경력)	(성취도 및 활동내용)
특기사항	(장점, 보유자격 및 기술 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필수제출서류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해양경찰청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공무직/기간제
	채용사유 결원보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2]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 발송

[보내는 사람]

응시분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
성명	
휴대폰	

해양경찰청 공무직 및 기간제 공개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7. 24.(금) ~ 8. 3.(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민원실 접수(도착)분에 한함)

[받는 사람]

등기 발송증 부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총무계(청사관리반)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 [032] 835 - 2528

2

1

9

9

5